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009. 10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I.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개요	
1. 국고금회계의 정의 .....	2
2. 국고금회계와 국고금의 관계 .....	3
II. 세부회계처리지침	
1. 국고금회계 일반사항 .....	6
2. 일반적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	7
(참고) 국고금회계의 특수회계처리 .....	16

# 1. 국고금 회계 처리지침 개요

## 1. 국고금회계의 정의

국고금회계는 통일주의 원칙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중앙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세출의 경우에도 예산배정에 의하여 통합 국고금에서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등 국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이 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민간기금 포함)과 자금운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회계를 포함) 및 예산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된다.

국고금회계가 적용되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모든 세입을 기획재정부의 국고계정에 불입 후 예산배정을 통해 지출 재원을 마련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고금회계를 통해 국고계정에 불입되고, 국고계정에서 지출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 기타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13개)

국고에 통합되는 수입과 예산배정에 따른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국고금회계를 이용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 받은 경우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국세청 -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5,000,000	소득세수익 5,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국고이전수입 5,000,000

- O부처 OO일반회계에서 연구비 1천만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O - OO일반회계	연구비 10,000,000	국고수입 10,000,000
·국고금회계	세출예산지출액 1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국고금회계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된다.

2. 국고금회계와 국고금의 관계

(1) 국고금의 정의 및 분류

1)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금 정의(국고금관리법 제2조)

- ①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국고금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2) 재무제표 계정과목상 국고금 정의

일반·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금으로 현금통화 및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을 비롯하여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차물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2) 국고금회계의 적용에 따른 국고금의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국고통일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에 속하는 중앙관서의 수입 및 지출이 국고금회계에 의해 단일 국고에서 관리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는 국고금이 표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재정상태표 작성 시 표시된다.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국고금이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접적인 지출재원이 되므로 국고금회계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나, 해당 특별회계의 잉여 현금성 자산이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에 포함되므로 국고금의 일괄관리를 위해 국고금회계를 사용하여 수익 및 비용지출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별도의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해당 국가회계실체 재정상태표에 현금성자산이 표시되도록 한다.

(3) 회계·기금 구분에 따른 국고금 분류 및 국고금회계와의 관계

국가회계실체의 구분에 따른 국고금의 분류와 국고금 회계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앙관서장이 관리하는기금	민간기금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여부	○	○	○	○	○	○	X
통합계정 여부	○	X	X	X	○	X	X
국고금회계 포함 여부	○	○	X(*1)	△(*2)	○	X	X
계정과목	한국은행 국가예금	한국은행 국가예금	한국은행 국가예금	· 한국은행 국가예금 · 금고은행 국가예금	한국은행 국가예금	한국은행 국가예금	국고금에 해당되지 않음
해당 회계 재무제표의 국고금 잔여 가능 여부(*3)	X 국고금회계에 집계	○	○	○	X 국고금회계에 집계	○	X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경우 세입세출외 거래이므로 국고금회계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수익 발생시 국고금 입금 회계처리를 ‘국고금’ 계정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우체국예금자금도 우체국보험적립금과 동일하다.

(\*2)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의 경우 금융영업수익의 발생 등 예산거래일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를 통하게 되나, 우체국예금자금 예치 등 비예산거래일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로 처리할 수 없다. 회전자금도 이와 동일하다.

(\*3)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고금은 해당회계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국고금회계상 국고금 잔액으로 남게 된다. 다만, 국고금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기금 또는 세입세출외 거래일 경우 자체 회계에서 ‘국고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국고금 계정과목이 발생 가능하다.

## II. 세부회계처리지침

### 1. 국고금회계 일반사항

#### (1) 수입·지출 발생 시 회계처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모든 수입은 각 개별 회계에서 '국고이전지출'로 처리되고 국고금 회계에서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출시는 국고금회계에서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고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금고은행이 수납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관서운영경비로 배정받는 경우에는 '국고예금'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국고금회계에서는 해당 회계로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한다.

#### (2) 결산보고서의 반영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독립된 하부 회계로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에 국고금회계를 추가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에서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상 당해연도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재무제표에는 당해연도 '국고금'의 순증가분으로 반영된다.

#### (3) 여유자금운용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금의 여유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정기에적금 등의 장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증권 및 장기투자증권, 회사채발행 및 유통 지원금 등은 국고금회계에서 별도의 계정에서 구분관리하여 장단기 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장기투자증권 및 대여금 등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각각 처리하되,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작성 시에는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재정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한다.

**2. 일반적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국고금 수납, 수입금의 반환, 국고금 지출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국고금회계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래 설명하고 있는 모든 국고금회계처리는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회계(일반, 특별 회계)의 '국고금회계 계정'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예시>

A부처 일반회계 수익 발생시 - 국고금회계 '일반회계계정'에서 '국고이전수입'처리  
 A부처 X특별회계 수익 발생시 - 국고금회계 'A부처 X특별회계계정'에서 '국고이전 수입'처리

**(1) 국고금 수납**

국고금 수납은 수입발생시 국세징수활동표에 반영되는 국(관)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경우와 기타 일반적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수익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 국(관)세청 징수 세금 수납시**

납세자가 국(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관)세청 등은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의 해당세목의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국고로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국고금회계에서는 이를 받아 현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때,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한 수익만을 국고금회계로 이전한다.

다만, 이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상의 수입과 국고금회계상의 국고이전수입은 국세징수활동표(국세청)와 순자산변동표(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에 표시된다.

**(예) 국(관)세청 세금 수납시**

**i) 국(관)세 수납시**

OO씨는 20X8년 5월 31일자로 기한이 마감되는 소득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5,000,000 대) 소 득 세 수 익 5,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5,000,000

**② 기타 수입금의 수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납부자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각 개별 회계에서는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에서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입금을 수납하는 시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회계처리만 수행하고 실제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때, 국고금회계로부터 국고수입으로 처리(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하도록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특별회계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은 국고금회계에서 특별회계 귀속 수입 중 세출예산지출액 금액과의 차액으로 잉여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아니한다('국고금 지출' 편을 참조).

**(예) 수익의 수납시**

대법원 일반회계는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00만원의 임대료를 수납 받았다.

<대법원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 1,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1,000,000

**(2) 수입금의 반환**

**① 과오납반환금**

과오납반환금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및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해 그 반환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과오납반환금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반회계는 수익을 취소, 기존 수입의 수취와 관련하여 국고금회계로 이전한 국고이전지출을 상계하며, 국고금회계에서는 기존 수입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고 국고금을 해당 일반회계로 이전시킨다.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전기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았어야 할 수익을 인식한 것이므로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타의 미지급비용 등으로 인식한다.

각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국고금회계와의 자금의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과오납반환을 위하여 국고금회계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아 ‘국고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한다.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는 ‘국고수입’, ‘세출예산지출액’이 상계제거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전기과오납반환금’잔액으로 남게 된다.

위 회계처리는 특별회계의 국고금 잔액이 세계잉여금으로 ‘국고금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i), ii)의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수입의 과오납반환**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의 과오납반환금**

OO부처 OO일반회계(특별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1년말 시점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 과오납반환금 지급결정시 -**

<OO부처 OO회계>  
 차) 사 용 료 수 익 3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 과오납반환금 지급시 -**

<OO부처 OO회계>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대) 국 고 이 전 지 출 300,000

<국고금회계>  
 차) 국 고 이 전 수 입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의 과오납반환금**

OO부처 OO일반회계(OO특별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2년 초 시점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중요한 오류수정이 아닌 것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

**- 20X2년 과오납반환금 지급결정시 -**

<OO부처 OO회계>  
 차) 전기과오납반환금 3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 과오납반환금 지급시 -**

<OO부처 OO회계>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

<국고금회계>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② 수입금환급금**

수입금환급금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관련 법률에 의거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입징수관이 환급결정하여 환급자에게 환급되는 자금을 말한다.

수입금환급금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수입금의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일반회계에서는 ‘환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고금을 국고금회계로부터 예산 배정받아 일반 지출과 동일하게 지출이 발생한다.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전년도 발생한 수입의 환급금일 경우에도 오류가 아니라 적법한 거래이므로 오류수정하지 아니하고 i)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환급 발생 당해연도의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법률 변경에 따라 전기 지급하였어야 하는 환급금을 오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환급하는 경우는 ① 과오납반환금의 ii) 전년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위 i), ii)의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b>(예) 수입금 환급금</b>			
OO부처 OO일반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1년말 시점에 법률변경에 의거하여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b>- 환급금 지급결정시 -</b>			
<OO부처 OO회계>			
차) 환 급 금	3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b>- 환급금 지급시 -</b>			
<OO부처 OO회계>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
<국고금회계>			
차) 세출예산지출액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③ 국(관)세환급금**

국(관)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세금과 관련된 과오납반환금을 통칭한다.

국(관)세환급금 발생시 국세청 일반회계에서는 국세수익의 해당하는 국세수익을 차감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로 이전했던 국고금을 수취하여 국고이전지출을 취소하는 분개를 실행한다.

이 때 국고금회계에서는 세금 수입 발생 시 국고이전 수입되었던 부분을 해당하는 일반회계에 반환하면서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분개를 실행한다.

<b>(예) 법인세의 환급</b>			
OO법인은 과오납한 법인세 100만원을 환급받았다.			
<b>- 환급금 지급결정시 -</b>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세 수 익	1,0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1,000,000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b>- 환급금 지급시 -</b>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1,000,000	대) 국 고 이 전 지 출 -	1,000,000
국 세 환 급 금			
<국고금회계>			
차) 국 고 이 전 수 입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④ 과오납반환금, 수입금환급금 및 국(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비교

구 분	당기발생 당기취소	전기발생 당기취소	비 고
과오납반환금	재정운영표상 기존에 인식한 수익을 취소	전기과오납반환금	-
수입금환급금	환급금으로 처리	좌기와 동일	적법한 회계처리이므로 당기 환급금으로 처리 (단, 법률 변경에 따라 전기에 지급하였어야 하는 환급금을 오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환급하는 경우는 과오납반환금의 전년도 발생한 수입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와 동일)
국(관)세환급금	국세수익을 차감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처리	좌기와 동일	국세징수활동표상의 국세수익 표기방법 적용

(3) 국고금 지출

① 세출예산지출액

i)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지출액

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배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득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실제 자금의 집행은 개별지출관의 요구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한국은행 본점의 국고금 계좌에서 발생하여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게 된다.

재무대표에는 위에서 언급한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 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실제 예산집행(지출)시 해당 회계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으로 각 회계에 예산을 배정함과 동시에 거래처(채권자) 지출 분개를 한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예) 세출예산지출액(일반회계)			
OO부처 OO일반회계에서 정부산하기관에 장기로 1억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OO부처 OO회계>			
차) 장 기 용 자 금	100,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00
<국고금회계>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ii)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지출액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 각 회계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금액만큼을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여 일반회계와 차이 없이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

(예) 세출예산지출액(특별회계)	
20X1년 3월 1일에 OO부처 OO특별회계에서 임대료수익 10,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20X1년 5월 1일 OO부처 OO특별회계에서 정부산하기관에 장기로 5,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 20X1년 3월 1일 수익인식 회계처리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0,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 10,000,000
<국고금회계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A) 10,000,000
- 20X1년 3월 1일 특별회계 귀속 수익의 예산배정회계처리 -	
해당사항 없음.	
- 20X1년 5월 1일 예산 내 집행시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장 기 용 자 금	5,000,000 대) 국 고 수 입 5,000,000
<국고금회계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B)	5,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 OO부처 OO특별회계 귀속 국고금 = 국고이전수입 - 세출예산지출액	
= A - B	
= 10,000,000 - 5,000,000	
= 5,000,000	
(OO특별회계 잉여금)	



② 관서운영경비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는 ‘국고예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국고금회계로부터 배정을 받아 각 해당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국고수입으로 수취하여 해당하는 비용으로 지출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 잔액의 반납시 기존 관서운영경비 지급이 과다했던 것으로 지급시 인식한 ‘세출예산지출액’ 및 ‘국고수입’을 차감하도록 한다.

‘국고금 - 국고예금’은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는 각 회계에서 사용하게 되나,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국고금회계로 반납하게 되므로 기말시점에서는 각 회계에서 동 계정 잔액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b>(예) 관서운영경비</b>			
20X1년 3월 1일 00부처 00일반회계에서 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여비를 관서운영경비 규정에 따라 100만원을 선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직원은 해외출장 후인 20X1년 5월 1일 사후정산을 위하여 여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 후 남은 잔액인 20만원을 반납하였다.			
<b>- 20X1년 3월 1일 국고금회계로부터 관서운영경비 교부시 -</b>			
<00부처 00회계>			
차) 국 고 예 금	1,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
<국고금회계>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b>- 20X1년 3월 1일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b>			
<00부처 00회계>			
차) 국 내 여 비	1,000,000	대) 국 고 예 금	1,000,000
<b>- 20X1년 5월 1일 관서운영경비 잔액 반납시 -</b>			
<00부처 00회계>			
차) 국 고 예 금	200,000	대) 국 내 여 비	200,000
차) 국 고 수 입	200,000	대) 국 고 예 금	200,000
<국고금회계>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	대) 세 출 예 산 지 출 액	200,000

(참고) 국고금회계의 특수회계처리

1.개요

국고금여유자금의 운용 및 국고금회계내 계정간 상호예탁 등 국고금 관리와 관련하여 국고금회계 내부 계정간 거래가 발생한다.

이러한 계정간 거래에 대해서 국고금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회계처리 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 사항을 국고금회계처리지침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2.국고금여유자금운용 관련 회계처리

(1) 국고금여유자금운용 회계처리

①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 구분 및 운용시의 거래방법

- 국고금관리법 제34조에서는 국고금 여유자금을 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7조<sup>1)</sup>에 따라 현재 국고금여유자금운용시 운용계정으로 ‘국고금예탁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고금회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계정 구분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p><b>&lt;국고금관리법 제34조&gt;(국고금의 운용)</b></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lt;개정 2005.1.27, 2007.8.3,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li> </ol>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li> </ol>
---

1)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과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5.1.27>
- ④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 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 ⑦국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 국고금여유자금운용시에는 국고금통합계정<sup>2)</sup>에서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세부운용계정으로 자금이 이체된 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RP매입 또는 한국증권금융 위탁에 의한 운용 등이 실행된다.
- 여유자금운용에 의한 원금 및 수익금의 회수시에는 원금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입금되고, 수익금은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입금된다. 이렇게 회수된 원금은 ‘국고금예탁계정’을 통하여 최초 여유자금운용을 위한 원금을 제공한 국고금통합계정으로 상환되며,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회수된 수익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② 회계처리

- 한국은행의 국고금여유자금운용 관리절차에 따라 국고금회계의 내부계정 간 자금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간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 국고금회계통합계정에서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운용계정으로 대체시킬 때 국고금통합계정에서 대체되는 자금은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이관되는 자금은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국고금회계통합계정으로 대체시킬 때에는 각각 ‘국고금회계전입금’ 및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한다.
-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경유하게 되는 ‘국고금예탁계정’에서는 통합계정에서 이관되는 자금은 ‘정부내예수금’으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이관되는 자금은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운용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부터 예탁한 자금을 회수하여 예수 자금을 국고금회계통합계정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2) 국고금 일반회계계정과 국고금 기타특별회계계정을 의미한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국고금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 여유자금운용시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융자산 등은 해당 투자과목(장·단기 투자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표시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도 국고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자산은 ‘국고금회계’에서는 운용자산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나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운용계정 내의 운용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 국고금여유자금운용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국고금여유자금운용

20X1년 3월 1일 국고금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국고금 일반회계계정에서 국고금 여유자금운용계정으로 100,000,000원을 대체하였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에 대체한 100,000,000원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30,000,000원은 국채유통시장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40,000,000원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말 현재 국고금여유자금운용 금액 중 30,000,000원이 잔여한 상태이다.

20X1년 12월 말까지 국채유통시장 지원금에 대하여 이자수익이 80만원 발생하였다.(미수이자수익발생)

20X2년 중 RP를 매도하여 이자수익 8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 40,800,000원을 회수하였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 20X1년 3월 1일 국고금 여유자금운용계정 대체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국고금회계전출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정부내예수금 100,000,000

차) 정부내예탁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국고금회계전입금 100,000,000

- 20X1년 3월 1일 국고금여유자금 운용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및 예탁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장 기 융 자 금 3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40,000,000

- 20X1년 12월 말 수익발생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수채권이자수익 8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 20X2년 회수시 -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800,000 대) 미수채권이자수익 8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000 대) 기타의장기금융상품 40,000,000  
차) 국고금회계전출금 4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000 대) 정부내예탁금 40,000,000

차) 정부내예수금 4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000 대) 국고금회계전입금 40,000,000

(2)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지출 회계처리

①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지출 거래

- 국고금관리법 제34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 한국은행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의 발행 등으로 인한 차입금의 상환시 사용 가능
  -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② 회계처리

- 한국은행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의 발행은 세입세출외거래로 차입 또는 증권이 발행된 해당 회계의 '국고금회계'에서 차입금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한국은행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의 발행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또는 국고금여유자금수익계정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중앙관서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앙관서 결산 시에는 국고금회계에서 처리하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 포함한다.
- 이자지급시  
차입금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국고금회계'의 계정에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 차입금 상환시  
차입금을 '국고금회계 - 해당 회계계정'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계정의 차입금을 상계제거하여 상환회계처리를 하고,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상환할 경우에는 타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지출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기타재원이전' 및 '기타재원조달'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지출

20X1년 3월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에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일시차입하였다. 20X1년 12월 말 OO특별회계는 발생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차입시 회계처리 및 상환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회계처리를 제시하도록 한다.

- 20X1년 3월 차입시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국내 단기 차입금 100,000,000

1)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계정>

차) 국내 단기 차입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10,000,000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

**II)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국고금회계 - 운용수익계정에서 지급한 경우**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계정>

차) 국내 단기 차입금 100,000,000 대) 기타 재원 조달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기타 재원이전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10,000,000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

**(3) 국고금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 등으로 인한 회계처리**

**① 개념**

- 국고금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을 통하여 '국고금회계'의 통합계정으로 상환되는 것은 원금만 해당하며, 수익은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회수되게 된다.
- 이에 따라, 국고금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 또는 금융상품의 미수이자 인식 등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인식하지 아니하고,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 장단기금융상품 또는 용자금과 관련된 발생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에 의한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자산의 증가 부분은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 즉, '장·단기투자증권'의 회수로 인한 처분이익 발생시에는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원금만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처분이익 금액은 전액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국고금여유자금운용 관련 자산 평가 및 회수 회계처리(1)**

20X1년 3월 1일 국고금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국고금일반계정에서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으로 100,000,000원을 대체하였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에 대체한 100,000,000원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30,000,000원은 주식을 매입하는데 지출하고, 40,000,000원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말 현재 국고금여유자금운용 금액 중 30,000,000원이 잔여한 상태이다.

20X1년 12월 말까지 국채유통시장 지원금에 대하여 이자수익이 80만원 발생하였으며, (미수이자수익 발생) 매입 주식의 공정가액은 40,000,000원이 되었다. 20X2년 중 RP를 매도하여 이자수익 8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 40,8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주식을 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 20X1년 3월 1일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 대체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국고금회계전출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정부내예수금 100,000,000  
차) 정부내예탁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국고금회계전입금 100,000,000

**- 20X1년 3월 1일 국고금여유자금운용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및 예탁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지분증권 - 주식 3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40,000,000

**- 20X1년 12월 말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차) 지분증권 - 주식 10,000,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000

**- 20X2년 회수시 -**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대) 지분증권 - 주식	30,000,00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40,000,000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0,800,000	대)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000	지분증권 - 주식 (*)	10,000,000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20,000,000
(*)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증가분			
<b>- 세부운용계정에서 일반회계계정으로 상환시 -</b>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gt;</b>			
차) 국고금회계전출금	7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대) 정부내예탁금	70,000,000
차) 정부내예수금	7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b>&lt;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0	대) 국고금회계전입금	70,000,000

#### (4)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 회계처리

##### ① 개념

• 여유자금운용시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융자산 등은 해당 투자과목(금융상품 등)을 표시하나,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국고금세부운용계정’과 ‘국고금운용수익계정’상 운용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은 재정상태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된다.

•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반영되는 것일 뿐이며, 국고금회계 자체는 해당 계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계처리

• ‘미수수익’ 또는 회수되어 ‘국고금 - 한국은행국가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체

대상이 아니며, 운용상품과 관련된 자산만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대체한다.

-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b>(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 회계처리</b>			
<b>(1) 유가증권 운용 거래</b>			
A부처 일반회계에서 100의 수입이 발생하여 통합계정의 A부처 일반회계의 자금 중 50을 국고금여유자금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운용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세부운용계정에서는 50을 가입하였으며, 기중 50%를 30(이자수익 5포함)에 회수하여 모두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 잔여한 상태이다. 남은 50%의 기말시점 평가액은 30(미수이자 발생)이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b>- 수익인식 및 단기금융상품 가입 -</b>			
<b>&lt;A부처 일반회계&gt;</b>			
차) 국고이전지출	100	대) 수익	100
<b>&lt;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	대) 국고이전수입	100
차) 국고금회계전출금	5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	대) 정부내예수금	50
차) 정부내예탁금	5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	대) 국고금회계전입금	50
차) 단기금융상품	5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
<b>- 단기금융상품 회수시 -</b>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세부운용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5	대) 단기금융상품	25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gt;</b>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	대) 금융상품이자수익	5

- 기말 -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 수 금 용 상 품	5	대) 금 용 상 품 이 자 수 익	5
이 자 수 익			

-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 -

<내부거래제거>

차) 정 부 내 예 수 금	5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50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50	정 부 내 예 탁 금	50
국 고 이 전 수 입	100	국 고 이 전 지 출	100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

차) 국 고 금 여 유 자 금 운 용 액	25	대) 단 기 금 용 상 품	25
------------------------	----	----------------	----

[재정상태표]

현금성자산	100	수익	100
-------	-----	----	-----

[재정운영표]

2, 상호예탁반환

(1) 정의

세입세출외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회계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있는 회계에 예탁하고 반환받는 거래로 '통합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과 '통합계정과 통합외계정간 상호예탁반환'이 있다. 통합계정은 국고금회계의 일반회계계정과 기타특별회계계정을 의미하며, 통합외계정은 기업특별회계계정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계정을 의미한다.

<국고금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51조(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고금의 상호예탁,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회계처리

1) 통합계정간 상호예탁반환

• 거래방법

통합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실질적인 계좌의 이동 등이 없으며 예탁 내역은 기획재정부에서만 관리한다. 국고금예탁계정은 통합계정에 대해 단일 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 회계처리방법

자금의 이동은 없으나, 상호 예탁 내역의 내부관리 목적으로 국고금회계 내 계정간 예탁, 예수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예) 통합계정간 상호예탁반환

일반회계계정에서 A특별회계(통합계정 내)계정으로 상호예탁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 예탁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정 부 내 예 탁 금	***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	-----	--------------------	-----

<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수 금	***
--------------------	-----	----------------	-----

- 반환시 -

<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계정>

차) 정 부 내 예 수 금	***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	-----	--------------------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탁 금	***
--------------------	-----	----------------	-----

**2) 통합계정과 통합외계정간 상호예탁반환**

• 거래방법

통합계정과 통합외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예탁계정을 경유하여 상호예탁반환이 이루어진다.

• 회계처리방법

통합계정과 예탁계정간, 예탁계정과 통합외계정간 정부내 예탁 및 정부내 예수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b>(예) 통합계정과 통합외계정간 상호예탁반환</b>			
일반회계계정에서 A특별회계(통합외계정)계정으로 상호예탁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b>- 예탁시 -</b>			
<b>&lt;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gt;</b>			
차) 정 부 내 예 탁 금	***	대)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gt;</b>			
차)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수 금	***
차) 정 부 내 예 탁 금	***	대)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b>&lt;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계정&gt;</b>			
차)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수 금	***
<b>- 반환시 -</b>			
<b>&lt;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계정&gt;</b>			
차) 정 부 내 예 수 금	***	대)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b>&lt;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gt;</b>			
차)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탁 금	***
차) 정 부 내 예 수 금	***	대)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b>&lt;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gt;</b>			
차) 한 국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탁 금	***

**3. 세계잉여금**

**(1) 의의 및 재무회계상 순자산과의 차이**

세계잉여금은 예산결산상 정부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주의 기준의 잉여금을 의미한다.

반면,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발생주의에 따른 잉여금을 비롯하여 자산의 평가 등에 의한 손익 증감 내역 등을 포함한다.

수익/비용이 아닌 자산/부채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일 경우(예 : 차입, 대여 등) 세계잉여금은 세출 또는 세입으로 반영되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예1)**

20X1년 정부는 100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실질적으로는 90이 회수되었으며, 90의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70이 지출되었다.

- 세계잉여금 = 90 - 70 = 20  
- 순자산 = 100 - 90 = 10

**(예2)**

기중의 수익 및 원가, 수입 및 지출은 위 (예1)과 동일하며, 20X1년 정부는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로 기말시점 20의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인식하였다.

- 세계잉여금 = 90 - 70 = 20  
- 순자산 = 100 - 90 + 20 = 30

**(예3)**

기중 세입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10차입을 하였다.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잉여금과 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 세계잉여금 = 10  
- 순자산 = 0

**(2) 세계잉여금의 연도간 전용**

예산회계상 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으로 처리된다. 차년도 세입으로 처리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에 세입처리한다.

**(예)**

20X1년의 세계잉여금 100 구성 : A특별회계 30, B특별회계 70  
세계잉여금 100의 20X2년 세입처리 : A특별회계 50, B특별회계 50 (A특별회계의 자금 추가 필요에 의하여 B특별회계 잉여금 20을 A특별회계의 20X2년 세입으로 배정하여 줌)  
--> 세계잉여금의 연도간 전용으로 20X1년도의 잉여금은 '0'이 됨.

### (3) 회계처리

- 예산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을 해당하는 연도의 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차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회계에서는 당해연도의 자금이나 차년도의 자금이나 동일한 국고금으로 '연도간전용'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계처리로 반영하지 않는다.
- 다만, 위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회계간 잉여금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1) 상호예탁반환'과 동일하게 예탁과 예수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이 내부거래제거로 상계된다.
-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에서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세계잉여금'으로 국고금 잔액으로 남게 된다.